

## <투자신탁 해지 공시>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및 해당 투자신탁 규약 제45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해지를 공시합니다.

### 1. 대상 투자신탁

구분	펀드명	판매회사
1	신영마라톤 60 증권투자신탁 A1 호(주식혼합)	한국투자증권

2. 해지사유 : 지속적으로 설정액이 미미한 소규모펀드로서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함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결정합니다.

3. 해지일자 및 상환금 지급일자 : 2011년 10월 31일(월)

4.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: 상환금 등은 해당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1년 10월 14일

신영자산운용㈜